

수원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1나61673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1나61673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2. 10 선고 2019가단22085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류종명, 강홍순

변론종결 2022. 6. 23.

판결선고 2022. 8. 25.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2. 10. 선고 2019가단22085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26. 체결한 증여계약을
89,173,05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89,173,05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26. 체결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130,003,25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30,003,25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7, 8행의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제1심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대출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인정 여부

1)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와 C가 협의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재산분할에 따라 양도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을 제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와 피고는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였는데 2018. 6. 29.경부터 협의이혼 절차에 들어간 사실, C는 위 협의이혼 절차 시작 직전인 2018. 6. 26.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 C와 피고는 2019. 1.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고 2019. 2. 11. 협의이혼 신고를 한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그 형식적인 등기 원인과 관계없이 단순한 증여가 아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써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가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나) 분할대상재산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미리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참조), 피고와 C의 이혼신고일인 2019. 2. 11.을 기준으로 분할대상재산을 확정한다.

① 혼인생활 중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 형성하고 유지해 온 재산으로서 피고와 C의 공동재산에 속하는 적극재산은 905,862,000원[= 시가 1,075,000,000원(을 제9호증) - 주식회사 E 피담보채권 71,638,000원(을 제2호증) - 주식회사 F 피담보채권 97,500,000원(을 제11호증)]1)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이 있다.

② 혼인생활 중 부부 및 자녀들의 생계유지 및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는 소극재산으로는 피고의 I, J에 대한 차용금 채무 5,000만 원(을 제12호증), 주식회사 E에 대한 대출금채무 70,828,779원(을 제13호증), K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채무 500만 원(을 제14호증), 주식회사 D에 대한 대출금채무 557,100,579원 합계 682,929,358원이 있다.

다) 적정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피고의 몫

앞서 본 각 증거, 을 제19호증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C와 피고의 재산분할비율은 4 : 6 정도가 적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을 산정하면 133,759,585원[= (적극재산 905,862,000원 - 소극재산 682,929,358원) × 60%, 원 단위 미만 버림]이다.

① 피고와 C는 2005. 11. 17.부터 2019. 2. 11.까지 약 14년 정도의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와 C는 혼인생활 중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씩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C는 피고와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아파트를 매도한 매도대금으로, 피고는 2016. 8. 16. L 주식회사를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 98,491,168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일부씩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혼인생활 중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통하여 생활비 등을 부담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한 대출금채무 역시 피고가 채무자로서 이를 변제하고 있다. 반면에 C는 협의이혼 무렵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조차 납부하지 못하던 상황이었고 협의이혼 이후에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1인당 150만 원 합계 300만 원)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협의이혼 이전의 일정 시점부터는 혼인생활 유지를 위한 생활비 등을 부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C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권을 갖기로 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던 곳이고 협의이혼 이후에도 자녀들과 함께 거주할 곳이 필요했기 때문에 C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 전부를 증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라) 사해행위 해당 여부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해 피고에게 귀속된 부부공동재산의 가액은 222,932,642원(이 사건 부동산 905,862,000원 - 피고의 소극재산 합계 682,929,358원) 상당이고, 이는 위 적정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피고의 몫을 89,173,057원(= 222,932,642원 - 133,759,585원) 가량 초과한다. 피고와 C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해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를 벗어나 C의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하였는바, 위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 89,173,057원은 원고와 같은 C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무자력 상태가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심화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의사가 인정된다.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이 반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 중 상당성을 초과한 89,173,057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상당한 재산분할의 범위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피고에게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을 명하기로 한다.

이 사건 증여계약 중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부분은 89,173,057원이고,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이를 상회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그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위 89,173,05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9,173,05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준규, 판사 신미진, 판사 박미영

부 동 산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 칠근콘
크리트구조 칠근콘크리트지붕 33층 공동주택 (아파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27층 호 칠근콘크리트구조 116.790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 17397.9㎡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 대지권 17397.9 분의 35.7736

중 1/2 지분 끝.

1)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F의 피담보채권과 관련하여, 위 각 채권의 채무자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이고 피고와 C는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으나, 을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G은 2020. 12. 8. 파산선고를 받음으로써 변제자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고와 C가 물상보증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각 채권액 상당액을 적극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한다.